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

■ 본 공동주택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3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illegible]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19.06.05(수)	2019.06.07(금)	2019.06.10(월)	2019.06.14.(금)	2019.06.15.(토) ~ 2019.06.24.(월)	2019.06.25.(화) ~ 06.27(목)
방법 및 시간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 ~ 17:30)	(10:00 ~ 16:00)
장소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4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7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서비스가(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 - 13748호(2019. 5. 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3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4층 32개동 총 592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1년 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약식표기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공급
민영주택	2019000502-1	75	75.9871	75.9871	22.4084	98.3955	20.5102	118.9057	168.1000	120	12	12	24	4	52	68
	2019000502-2	84	84.9317	84.9317	23.0972	108.0289	22.9246	130.9535	187.8877	472	47	47	94	14	202	270
	합계									592	59	59	118	18	254	338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75.9871	84.9317	비 고
약식 표기	75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 원)

주택형	층 구분	공급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 1회 2019.10.30	2회 2020.03.30	3회 2020.07.30	4회 2020.11.30	잔금(30%) 입주지정일
75	1(원테라스)	22	93,649,000	267,351,000	361,000,000	36,10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108,300,000
	1(더블테라스)	8	93,649,000	272,351,000	366,000,000	36,6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09,800,000
	2	30	93,649,000	230,351,000	324,000,000	32,4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97,200,000
	3	30	93,649,000	234,351,000	328,000,000	32,8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98,400,000
	최상층	30	93,649,000	303,351,000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84	1	52	104,672,000	282,928,000	387,600,000	38,76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116,280,000
	1(더블테라스)	66	104,672,000	290,928,000	395,600,000	39,56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118,680,000
	2	118	104,672,000	242,928,000	347,600,000	34,76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104,280,000
	3	118	104,672,000	247,928,000	352,600,000	35,26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105,780,000
	최상층	118	104,672,000	322,928,000	427,600,000	42,76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128,280,000

■ 공통사항 [illegible]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5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8	10
	장기복무제대군인		2	8	10
	장애인	광주광역시	2	8	10
		전라남도	2	8	10
	장기복무군인(10년이상)		2	8	10
	중소기업근로자		2	7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2	47	59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8	71	89
		일반공급(25%)	6	23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4	14	18
합계			52	202	254

■ 특별공급 공통사항 [일반(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 중소기업 근로자 · 10년 장기복무 군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illegible]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광주광역시(기타 광역시)	전라남도(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으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부부중 한명이 소득이 있는경우	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월평균소득기준 120%이하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부부중 한명이 소득이 있는경우	월평균소득기준 100%초과~120%이하	5,401,815 ~6,482,177	6,165,203 ~7,398,242	6,699,866 ~8,039,838	7,348,892 ~8,818,669	7,997,918 ~9,597,500	8,646,944 ~10,376,332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월평균소득기준120%초과~130%이하	6,482,178 ~7,022,358	7,398,243 ~8,014,763	8,039,839 ~8,709,825	8,818,670 ~9,553,558	9,597,501 ~10,397,292	10,376,333 ~11,241,026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전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고시」 제2015-85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19.0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한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직장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주(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illegible]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illegible]
		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illegible]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	[illegible]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적용기준및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3.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2019.06.05(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공인인증서 지참)
일반공급	1순위		• 2019.06.07.(금) (APT2you :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 2019.06.10.(월) (APT2you : 08:00~17:30)		

[illegible]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4.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일정 등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일시 : 2019.06.14.(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06.15(토) ~ 2019.06.24(월) (10일간, 10:00 ~ 17:3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7)	• 일시 - 2019.06.25(화) ~ 2019.06.27(목)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7)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illegible]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9.06.14 ~ 2019.06.24(11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06.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 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2019.06.15(토) ~ 2019.06.24.(월))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O		주민등록증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서명으로 공급 계약 시 인감도장 생략
	O		무통장입금증	-	●계약금(아파트,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주택	*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O	건축물관리대장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본인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특별공급[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견본주택 비치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인감도장 생략)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내 대리인 인적사항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감도장 생략(대리 청약 시)
	O		주민등록증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청약연,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www.apt2you.com)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활용 일괄동의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적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O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 (기관추천)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주체에게 일괄 명단 통보 시 별도 추천서 등 불필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 본인 작성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로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O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 본인 작성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로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의 독입증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 계약금 입금증 (분양금의 계약금 + 추가선택품목금의 계약금) *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인감도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 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내 대리인 명시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illegible]

■ 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717-910015-871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illegible]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20% (2019.12.26.)	잔금 70% (입주예정일)
75	11,000,000	1,100,000	2,200,000	7,700,000
84	12,100,000	1,210,000	2,420,000	8,470,000

■ 발코니확장비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717-910016-217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선택품목 리스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품목(확장형)				세부내용	비 고
75	침실 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
				선택형2	통합형	견본주택 설치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견본주택 설치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뚜껑형	-
84	침실 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견본주택 설치
				선택형2	통합형	-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견본주택 설치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뚜껑형	-
	알파룸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알파룸+팬트리	견본주택 설치
				선택형2	알파룸	-

- 침실2,3 가변형 벽체 통합형 선택시 침실3 벽지 기준으로 설치되며, 가변형 벽체 선택형에 따라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알파룸 가변형벽체 선택은 최상층 세대는 제외되며, 알파룸 선택에 따라 조명, 조명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위치 및 출입도어의 사양은 변경됨.
- 알파룸 가변형벽체 선택형2 선택시 현관 시스템 선반형 가구의 공간 사이즈는 다소 축소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계약 시 선택가능합니다.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위치	판매 가격	비 고
75	선택1	2대	거실+침실1	3,300,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 +침실3	5,430,000	
84	선택1	2대	거실+침실1	3,300,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30,000	
	선택3	5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800,000	알파룸 : 선택형2 해당

●슬라이딩 도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타입)	품목명	판매 가격	비 고
현관 중문	전 주택형	슬라이딩도어	990,000	최상층 세대 제외

● 유상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illegible]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하나은행	717-910016-23004	주식회사 디오오피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illegible]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구분(주택형)	84	75	비고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26,056,570	23,732,994	

7. 기타

■ 유의사항 [illegible]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사업승인조건)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 유인물 · 전화 ·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 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8. 단지 여건사항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는 신창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학교임.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초등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seobu.gen.go.kr/) '행정정보마당 / 공지사항 / '통학구역 결정고시' 참조
- 중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참조_062)380-4500

■ 단지외부여건 [illegible]

■ 소음예측 측정기관 및 측정결과(사업승인조건)
- 평가기관 : ㈜비엔이소음진동연구소 (대표자 : 이주엽)
- 실외소음 예측결과

실외소음도 예측 및 평가 (단위, dB(A))

동	라인	지점	최고 예측층	예측 실외소음도 주간	야간	판정
101	1	2	2F	58.0	54.9	기준이내
102	2	2	3F	47.8	44.9	기준이내
103	1	2	4F	46.2	43.3	기준이내
104	1	2	4F	44.8	41.9	기준이내
105	1	2	4F	49.2	46.3	기준이내
106	4	2	4F	45.3	42.4	기준이내
107	2	2	4F	45.4	42.5	기준이내
108	2	2	4F	44.6	41.6	기준이내
109	1	2	4F	47.7	44.7	기준이내
110	3	2	4F	44.0	41.0	기준이내
111	1	2	4F	43.9	41.0	기준이내
112	1	2	4F	43.0	40.1	기준이내
113	1	2	4F	47.6	44.6	기준이내
114	1	2	4F	45.1	42.2	기준이내
115	1	2	4F	43.5	40.7	기준이내
116	1	2	4F	43.0	40.0	기준이내
117	1	2	4F	41.9	39.0	기준이내
118	3	2	4F	42.9	40.0	기준이내
119	2	2	4F	42.7	39.7	기준이내
120	1	2	3F	43.9	41.0	기준이내
121	1	2	4F	45.2	42.3	기준이내
122	1	2	4F	47.4	44.5	기준이내
123	1	2	4F	48.0	45.0	기준이내
124	1	2	4F	48.9	45.9	기준이내
125	1	1	4F	48.7	45.7	기준이내
126	2	1	4F	48.3	45.4	기준이내
127	4	1	4F	50.7	47.8	기준이내
128	4	1	4F	52.5	49.5	기준이내
129	4	1	4F	55.9	52.9	기준이내
130	1	1	4F	51.8	48.8	기준이내
131	1	1	4F	54.0	51.0	기준이내
132	1	2	4F	52.2	49.2	기준이내

9.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llegible]

10. 기타 주요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 21호(친환경주택 성능수준규정)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 KS F2292 1등급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 급수펌프(인버터),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9호 카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 내 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욕회등 등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양변기, 세면기수전, 샤워기헤드, 욕조수전 샤워헤드, 주방수전)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변경 될 수 있음) (단위 : 원/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정보통신 감리	소방 감리
회사명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단에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단위:원)	1,948,562,000	358,560,700	3,300,000	18,7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19-101-0003800호	155,179,64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illegible]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illegible]

▣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정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상 호	㈜하나자산신탁	㈜한양	㈜디오오피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0144347	200111-04394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 (구월동, 일류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22, 3층 (금남로 3가, 금남빌딩)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7
▣ 분양문의 : ☎ 1566-533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